

『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,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‘보육정보센터’를 ‘육아종합지원센터’로 변경,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(안 제9조~제14조)
-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에서 현행법과 지침 반영(안 제15조)
 -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 신설(안 제17조~제19조)
-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과 관련 상위법 반영(안 제24조, 제2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상위 법령과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제3장에서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시설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,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.
- 제4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「주택법」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,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제5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,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,
-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